

# 일반사무 위탁계약서

2023. 9. 22.

위탁자 : 주식회사 이베데스다대한제 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수탁자 : 스카이펀드서비스 주식회사

SKYPS

## 일반사무 위탁계약서

본 일반사무 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은 2023년 9 월 22 일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그 본점의 주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에 두고 있는, 주식회사 이베데스다대한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위탁자”)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그 본점의 주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CCMM빌딩 7층)에 두고 있는, 스카이펀드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수탁자”).

### 전 문

1. 위탁자는 『붙임1(본건 사업의 개요)』 기재와 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하 “사업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주요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본건 사업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또는 등록, 이하 같음)(이하 총칭하여 “영업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필요한 영업인가의 취득을 전제로, 위탁자는 수탁자를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령(아래에서 정의됨)에 따라 일반사무업무를 담당할 일반사무수탁회사로 선임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일반사무 수탁업무를 이행하고자 한다.

이에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제 1 조 (목적 및 적용)

본 계약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위탁을 받아 일반사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적용원칙)

위탁자의 일반사무 위탁에 관하여 관련법령 또는 위탁자의 정관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법령이 변경되거나 위탁자의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3 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달리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령상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

1. “사업연도”라 함은 위탁자의 정관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2. “관련법령”이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3. “관련 수탁회사”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위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및 판매회사를 말한다.
4. “반기”라 함은 사업연도를 6 개월 단위로 구분한 기간을 말한다.
5. “분기”라 함은 사업연도를 3 개월 단위로 구분한 기간을 말한다.
6. “세무대리인”이라 함은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들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나 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세무대리 업무라 함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제반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및 신고와 세무자문 용역을 의미한다.



7.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위탁자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의 자산의 투자, 운용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8. “자산보관기관”이라 함은 위탁자와의 자산보관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의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9. “판매회사”라 함은 위탁자와의 판매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제 4 조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자는 수탁자를 일반사무수탁회사로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별 세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붙임 2(위탁업무의 범위)』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
2.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운영에 관한 사무
4. 자산의 계산에 관한 사무
5. 세무에 관한 실무사무
6.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시업무 지원
7. 해산 및 청산 업무
8. 위 각호의 부수업무

#### 제5조 (일반사무 수행상의 의무사항)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사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매 결산기 종료일 후 90일 이내에 매 결산기의 재무제표를, 매 분기 종료일 후 45일 이내에 매 분기의 재무제표를 각각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본점에 비치하고, 위탁자의 주주 및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위탁자가 정관변경(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2조의2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 영업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 위탁자의 합병 또는 영업인



가 사항의 변경(다만, 경매, 공매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인가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자료를 자산관리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수탁자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모든 보고서와 관련서류는 관련법령 및 관계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양식 및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⑤ 수탁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사항 수행 시 관련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보관기관으로부터 적시에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제 6 조 (회계장부, 관련서류의 관리 및 공시업무 지원)

- ① 수탁자는 본 계약에 의한 일반사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장부와 그와 관련한 자료를 위탁자의 청산 시 및 관련법령에 정한 기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회사가 수탁자에 대하여 일반사무와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자산관리회사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위탁자와 관련된 서류를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 7 조 (관련 수탁회사와의 협조의무)

- ① 수탁자는 일반사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위탁자의 관련 수탁회사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위탁자의 관련 수탁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위탁업무와 관련된 관련법령상 보고, 통지 및 공고 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관련 수탁회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8 조 (보수)



-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일반사무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 ② 제 1 항의 보수는 위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의 취득을 전제로, 영업인가를 득하고 1 차 유상증자 주금이 납입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연간 4,400 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매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지급한다. 보수의 지급시기는 분기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당해 분기의 수탁자의 일반사무업무 수행기간이 3 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분기 보수는 당해 분기의 일수에 실제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최종분기의 만기일은 위탁자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로 한다. 단, 최초 분기 혹은 최종 분기의 업무수행기간이 3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분기 보수는 당해 분기의 일수에 실제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 9 조 (비용 부담)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일반사무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붙임 3(일반비용 명세)』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에 관한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 제 10 조 (진술 및 보장)

-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득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로서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 요건(자본금, 발기인,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음을 보장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본 계약기간 동안 수탁자가 관련법령에 규정한 요건에 적합한 일반사무수탁회사임을 보장한다.

#### 제 11 조 (책임과 면책)

- ① 수탁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고의·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당사자 쌍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인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과실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위탁자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는 면책 된다.

- ② 전항의 위반으로 인한 수탁자의 연간 총손해배상액은 계약기간 중 손해 발생시점의 이전 1년간 실제 발생한 제8조의 보수를 한도로 한다. 단, 수탁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 제 12 조 (양도 및 재위탁)

-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②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일반사무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의 사유, 범위 및 조건 등에 대하여 위탁자의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관련법령에 따라 재위탁을 해야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사회에 서면으로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가 수탁 받은 일반사무업무를 재위탁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및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관련법령에 따라 재위탁이 요구되는 경우 및 위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13 조 (비밀 유지)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 또는 법령 및 기타 감독당국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위탁자 및 일반사무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4 조 (지시 및 통지)

- ① 수탁자는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제4조의 위탁업무와 관련된 지시 내용(이하 “지시서”라 한다)을 소정의 승인권자의 서명 혹은 인감에 의한 지시서 또는 통보서의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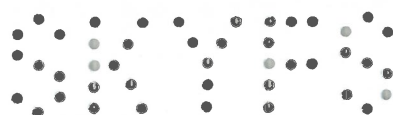


1. 직접 전달
  2. 우편(등기 또는 항공)
  3. 팩스전문
  4.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메일(E-mail)
  5. 상호간에 합의에 의하여 설치된 전산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전송
- ② 제1항에 의한 지시 또는 통보의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당해 회사의 법인 인감에 갈음하여 별도의 인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 및 관련 수탁회사에게 그 용도를 명시한 인감신고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인감의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
- ③ 제1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지시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대방 또는 관련 수탁회사에 대한 접수 또는 도달시점을 그 효력발생시점으로 본다.
- ④ "수탁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1. 전쟁, 지진 등의 천재지변 등의 사항
  2.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운용지시 제공 수단의 기계적인 결함
  3.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4.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제 15 조 (효력발생일)

본 계약은 위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취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 16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위탁자의 청산종결 등기일 또는 본 계약 제 19 조에서 정한 해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 제 17 조 (계약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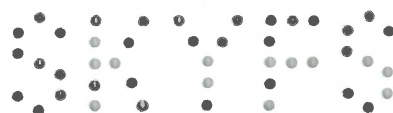
- ①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제16조의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8 조 (제공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등)

-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반사무관리업무 제공이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이 여하한 사유로 해지, 취소, 무효화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위탁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인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탁자는 인계자료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유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 19 조 (계약의 해지)

- ①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14일 이상의 기간(이하 "시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 시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위탁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새로운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일반사무수탁계약을 체결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또한,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수탁자는 그 해지일까지의 보수를 수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 ②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거래정지, 인가취소,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회생, 파산 등의 절차가 개시되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60일 전에 상대방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본 계약은 위 60일이 경과하는 날에 해지된다. 이 경우 "수탁자"의 보수는 제8조에 따라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 20 조 (계약종료시의 조치)

- ① 본 계약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종료되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종료 시점의 위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위탁자를 위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위탁자의 새로운 일반사무수탁회사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제 3 자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3. 위탁자의 새로운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위탁자의 본 계약상의 업무를 즉시 인계할 수 있도록 위탁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제반 조치(업무 수행상황의 설명, 업무이관 관련 인력확보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 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수탁자의 귀책인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제 21 조 (관련법령의 준용)



계약규정에 없는 사항이나 본 계약서의 해석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또는 일반상관례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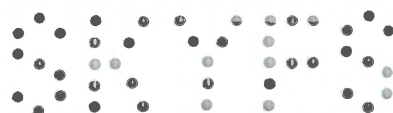
**제22조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며,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 1 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3조 (청렴계약조항)**

-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련 상대방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②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련 상대방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 제반 불이익을 감수한다.

(다음 페이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하여 이하 여백)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하다.

2023 년 09 월 22 일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 층, 33 층(삼성동, 아셈타워)

회사명 : 주식회사 이베데스다대한제 5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 권 용 하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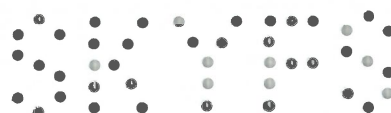


수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CCMM 빌딩 7 층)

회사명 : 스카이펀드서비스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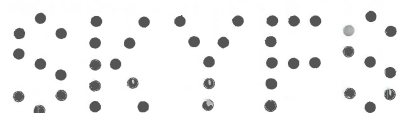
대표이사 : 박 재 범 (인)



붙임) 1. 본건 사업의 개요

| 구 분      |         | 내 용                                          |
|----------|---------|----------------------------------------------|
| 사 업 명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역세권 청년주택<br>(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
|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33-1                        |
| 부지<br>개요 | 대지면적(㎡) | 4,462.80㎡                                    |
|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 건축<br>개요 | 연면적(㎡)  | 35,500.56㎡                                   |
|          | 용적률(%)  | 499.67%                                      |
|          | 건축규모    | 지하 4층 ~ 지상 19층                               |
|          | 세대수     | 공동주택 382세대                                   |

상기 개요는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위탁업무의 범위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

- 가. 주주명부 및 이에 부수되는 장부의 작성 및 관리
- 나. 발행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 다.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대한 주주에의 통지

2.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 가. 주권의 발행 및 교부
- 나. 예비증권 등의 보관 및 관리
- 다. 증자 및 감자와 관련한 사무

3. 운영에 관한 사무

- 가. 사업자등록의 관리, 등기 관련 업무
- 나. 이사회 및 감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실무업무의 보조
- 다. 관련 수탁회사에 대한 보수의 계산, 통지 및 관리
- 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업무
- 마. 회의의 준비, 진행협조 및 그 결과의 조치 등을 포함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 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사록 작성 및 배포

4. 자산의 계산에 관한 사무

- 가. 위탁자의 결산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금전 분배에 관한 계산서 등) 및 그 부속명세서의 작성
- 나. 위탁자의 매분기 및 결산기 투자보고서 작성 업무 지원
- 다. 위탁자 운용자산의 순자산가치 및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
- 라. 회계감사 수감
- 마. 기타 계산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요청하는 자료의 작성(위탁자의 매월 현금원장작성 등)



**5. 세무에 관한 실무사무**

- 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간주매출부가세의 계산,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업무 보조  
(단, 세무대리업무는 위탁자가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하며 수탁자는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업무 지원을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공업무를 수행한다)
- 나. 임원 보수, 용역료 등의 지급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업무 보조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된 세무당국 등에 대한 신청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업무 보조
- 라. 기타 보조업무 중 자산관리회사와 별도로 합의된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업무 보조

**6.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시업무 지원**

- 가.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주주, 채권자, 감독기관 등에 대한 통지 및 위탁자의 공시업무 지원  
(단, 자산관리회사나 자산보관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 책임은 면제된다)
- 나. 매분기 및 사업연도의 투자보고서 공시업무 지원
- 다.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계법령에 따른 작성
- 라. 감독기관 등이 법령에 의거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의 제출업무지원

**7. 해산 및 청산업무**

- 위탁자의 해산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위 1 호부터 6 호에 해당하는 업무



붙임) 3. 일반비용 명세

1. 설립관련 비용

- 가. 등록면허세 및 공채 매입 비용
- 나. 정관 및 의사록 등의 공증수수료
- 다. 기타 법인 인감(명판 포함) 제작 비용

2. 명의개서 및 주권발행 업무관련 제비용

- 가. 실물발행의 경우 주권발행비용, 증권용지대금, 인지세, 가쇄비용
- 나. 주주에 대한 통지관련 주총참석장, 의결권위임장, 배당 및 신주배정통지서, 주권 수령증 등의 우편발송비용
- 다.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하는 제신고서 및 증명서 양식, 주주명부 등의 인쇄비

3. 위탁자의 계산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등 제비용

- 가. 주주총회 공고비용, 주주총회 장소 임대비 등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관련비용
- 나. 이사회의사록, 정관 등의 인쇄비
- 다. 법무사수수료,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등의 제증명 발급 비용
- 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무 신고와 관련된 세무사 수수료 등의 비용
- 마. 법률, 회계 및 세무 자문수수료. 단, 본 자문수수료는 합하여 연간 일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으며 초과 지출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 바. 결산보고서 등 계산 업무와 관련한 인쇄비
- 사. 관련 수탁회사·감독기관 및 주주에 대한 보고서 등의 발송비용
- 아. 채권가격평가기관에 의한 채권 등의 가격평가 관련 비용
- 자. 서류 운송(퀵서비스, 우편물) 관련 비용
- 차. 기타 사무관리업무와 관련한 실비



4. 기타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열거되지 않은 것으로 그 성격상 위탁자의 부담이 필요한 비용.

단, 건당 30 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위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긴급한 상황, 예를 들어 급히 집행하지 않으면 자산의 안전 또는 인명이 위험하게 된다고 판단되거나 회사에 손실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선집행한 후 사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인 감 증 명 서

법인등록번호 : 110111-7124938



상 호 : 스카이펀드서비스 주식회사 (SKY Fund Services.Co.,Ltd)  
본 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706에이호(여의도동, 시시엠엠빌딩)

대표이사 박재범  
(7404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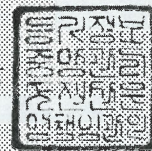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1,000원 영수함.

1.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212037423130105021810035200329140261T7M1K1D1SOL1S1 10

발급확인번호 DAXJ-ZYUL-XXV3

- 1/1 -

